

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유용원 · 김상훈 · 김예지  
송언석 · 이달희 · 강선영  
김태호 · 김성원 · 김미애  
강대식 · 이현승 · 박충권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,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,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9항 신설 등).



##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항(중전의 제10항) 중 “제8항”을 “제9항”으로 한다.

-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국가유산청장”을 “국가정보원장, 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회계”를 “국가안전보장, 회계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5.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

제25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

제34조제1항제4호 중 “표준화”를 “표준화 및 국산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~ ⑧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⑨ (생략)</p> <p>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: 재정경제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</p>	<p>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</p> <p>⑪ ----- -----<u>제9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



<p>의 <u>표준화</u></p> <p>5.·6. (생 략)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--<u>표준화 및 국산화</u>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